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1. 27(월) 10:00

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24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3. 11. 15.
- 라. 회부일자 : 2023. 11. 15.

2. 제안이유

100세가 된 어르신에게 지급하던 장수축하금을 90세가 된 어르신 에게도 차등 지급함으로써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장수축하금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장수어르신을 90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안 제2조제1호)
- 나. 장수축하금을 90세 10만원 이내, 100세 100만원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4조부터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 조치

5. 검토의견

가. 개정 이유

장수축하금 지급을 기존 100세 노인에서 90세 노인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나. 주요 내용

- 1) 장수어르신을 90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안 제2조제1호)
 - 대상 연령을 100세에서 90세로 확대 적용
- 2) 장수축하금을 90세 10만원 이내, 100세 100만원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4조부터 제6조)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인원	333	446	512	590	740
	금액	45,900	63,500	75,500	95,900	127,100
90세	인원	319	425	485	549	681
	금액	31,900	42,500	48,500	54,900	68,100
100세	인원	14	21	27	41	59
	금액	14,000	21,000	27,000	41,000	59,000

○ 비용 추계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인원	333	446	512	590	740
	금액	45,900	63,500	75,500	95,900	127,100
90세	인원	319	425	485	549	681
	금액	31,900	42,500	48,500	54,900	68,100
100세	인원	14	21	27	41	59
	금액	14,000	21,000	27,000	41,000	59,000

다. 검토의견

- 본 조례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장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의 고취를 위해 2020년 9월 제정되어 100세 어르신에게 축하금을 지급해 오고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을 90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경로효친의 고취와 사회적 책무를 보다 강화하는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2022. 3. 22.] [법률 제18609호, 2021. 12. 21., 일부개정]

-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2022. 6. 15.] [법률 제18580호, 2021. 12. 14., 일부개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